

일본 PL법의 시행과 변천

■ 글 / 하태웅 변호사 법무법인 유·러

이 지구상의 제조물책임(PL)법리는 처음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31여개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각 국가별 법의 체계, 사회구조와 습관, 문화적 분위기 등의 여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행상 약간씩의 상이점이 있으며 다양한 적용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일 먼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각종 제조물책임법리가 비교적 발달된 미국과는 상대적으로, 우리와 같은 동양권에서 같은 유교문화권으로 우리나라와는 이웃에 있으면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시행과 적용상의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1994년 4월 12일에 제정되어, 이듬해인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항상 준비하는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부터 각 행정기관을 중심

으로 피해사고 예방에서부터 피해구제 및 각종 제품의 안전대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각종 제도나 체제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과는 다른 사회제도와 문화적 토양 그리고 법적 체제로 인해, PL법 시행후 급격하게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예상외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5년 법시행 후 현재까지 꾸준히 소송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미국과 같은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은 인정하지 않는 만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배상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일단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일반 소비자가 외면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계속적으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그 존재가치를 훼손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소홀한 대처는 기업경영에 결정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조물책임 위험과 유사한 위협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제조물책임법은 일본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

므로 일본의 사례와 추이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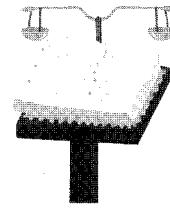
지금까지 나타난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그런 대로 몇 가지의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분쟁의 해결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합의나 화해를 통한 제조물책임 분쟁의 해결방식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 법 시행이후 2001년 상반기까지의 제조물책임관련 소송건수는 약 160건 정도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고처리가 조용히 처리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화해를 통해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물책임법의 본격 시행이전에 일본은 행정주도형 분쟁조정기관인 법원의 분쟁해결 기관(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acilities) 및 민간주도형 분쟁조정기관이 이미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상설기관의 중재로 인한 상당수의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사고들이 시끄러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용히 해결된 것이다. 행정주도형 분쟁조정기관이란 고충처리와 피해구제 위원회와 같은 것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의 총리실에 해당하는 내각부 산하의 국민생활센터 및 각 지방의 450여 개소나 되는 생활센터에 법계, 학계, 업계, 시험검사기관,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 및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주도형은 PL상담센터나 심사조정위원회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전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등 업종별로 구성된 단체나 협회에 PL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자사변호사와 대기업에서 파견된 기술직을 상주시켜 피해신고내용의 상담과 화해의 알선을 우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화해가 실패하게 되면, 심사조정소위원회와 같은 비상설 전문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하여 분쟁조정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심사조정소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해 당사자들이 이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종국에는 법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 일본의 특징은 역시 일본다운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일본정부는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기 수년 전에 이미 분쟁해결기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제조물의 결함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소와 시험기관의 일관된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여 소송 및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그리고 각종 홍보활동과 제품안전성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자금융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PL일괄제조물보험의 운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법 시행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 기업을 위한 배려에 만전을 기했다.

그리고 각 기업체들도 제조물책임법 시행이전에 일본형 단계별 조직단위로서 PL 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사원교육의



강화를 포함한 총체적이고 전사적인 PL 대비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PL 위원회는 제품의 설계, 생산, 구매, 판매, 유통 등의 각 단계별로 안전성검토(safety review)와 내구성측정(endurability estimation)을 수행하고 제조물이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고 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 PL법 시행이후 분쟁발생의 소지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제품안전과 사용수칙에 대한 인식은 PL법 도입후 크게 변화하여 PL센터의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상담건수 및 소송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해당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시장에서 그 지위를 급격하게 상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들어 제조사와 판매자는 물론 소비자의 의식도 상당히 고양되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 및 기업체가 어느 정도 차원의 준비가 제법 진전된 이후에 제조물책임법이 순조롭게 시행되었다. 물론 법도입 후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으나 큰 혼란없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소송결과를 볼 때 법 적용의 양상이 미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사료된다. 그렇다고 향후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법 체계 및 소송의 양상에 있어 현재의

상태를 계속하여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국내 제조물책임법이 일본의 제조물책임법과 성격이나 형태에 있어서 비슷한 토양 위에서 매우 유사하게 제정되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한국정부 및 기업체의 준비상황 역시 주로 일본을 모델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 진행추이를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追記]

일본은 1995년 7월 1일 제조물책임(PL)법 시행 이후 7년 넘게 경과했는데, 그간의 운용상황을 보면 일본의 PL판례에 피해자의 폐소가 예상외로 많은 것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제조물책임법의 개정 논의가 일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1. 제조물개념의 확대
2. 추정규정의 도입
3. 피해자정보개시 청구권인정
4. 부가금도입(미국의 지별적 배상과 유사)
5. 소비자단체 소권인정
6. 사업자의 내부고발자(turn-coat) 보호
7. 개발위험의 형변에 관한 규정의 삭제